장성군 공고 제2024-239호

장성군 불법주·정차 주민신고제 운영(변경) 행정예고

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장성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4. 2. .

장 성 군 수

1. 취지 및 목적

불법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의 변경사항을 알리고 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함

2. 행정예고기간 : 2024년 2월 29일 ~ 3월 20일 (20일간)

3. 공고방법 : 장성군 홈페이지(https://jangseong.go.kr)

4. 관련근거

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,
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, 제160조제3항(과태료)

나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
및 별표7(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)

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(예고내용 등)

5. 주요 변경사항

가. 신고대상 구분 변경 : 보도(기타 구역) ⇒ 보도(6대 구역)

나. 주정차 홀짝제 구간 내 주민신고제 운영방법 안내

6. 시 행 일 : 2024. 3. 21.(목)

7. 주민신고제 운영사항

가. 운영사항(변경)

구분	주민신고 가능구간	운영시간	촬영 간격	비고
6대 구역	**소화전**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	24시간	1분	
	교차로 모퉁이 노면표시(황색실선)가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			
	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			
	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			
	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	**평일 08시~20시** (토,일,공휴일 제외)		
	보도(인도)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	**24시**	1분	

나. 주정차 홀짝제 구간 내 운영방법

구 분	주정차 홀짝제 정차가능 구간	주정차 홀짝제 정차금지 구간	비고
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(소화전, 교차로 모퉁이, 버스정류소, 횡단보도,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)	**과태료 부과**	**과태료 부과**	
보도(인도)	**과태료 부과 유예** **다만, 차량바퀴 모두를 인도에 올리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**	**과태료 부과**	

다.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(불법주정차 신고)

라. 신고요건

○ 위반사진 촬영간격 : 6대 불법 주·정차 금지구역 1분

○ **배경이 동일한 위치 및 방향**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

- 동일한 위치와 방향이 아닌 사진의 경우 과태료 미부과
- 사진 2장 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 사진 첨부 가능

○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
- 안전표지[주·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(황색실선 또는 복선)]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신고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
- **주정차 홀짝제 구간은 신고사진으로 정차 가능 · 정차금지 지역이 확인되어야 함**

마. 과태료 부과 : 위반지역, 신고대상, 촬영간격 등 사진자료 확인 후 신고요건 충족 시 부과

- 부과금액 :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별표6, 별표7의 부과기준

7. 의견제출

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기간 : 2024년 2월 29일 ~ 3월 20일

나. 의견제출 내용

○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○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, 대표자명, 법인번호 등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의견제출 방법 및 양식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
○ 주　　소 : 우)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
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

○ 전화·팩스 : ☎ 061) 390-7375 / FAX 061) 390-7583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교통복지팀 담당자 (☎ 061-390-7375)

마. 기타사항 :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:)	
	의 견		
	기 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장 성 군 수 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